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9월 2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

●대통령령 제33749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매장문화재 표본조사”를 “표본조사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6조의2 및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

나. 가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

제32조제2항 중 “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·보관 조치 권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·보관 조치
-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

별표 5 II.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“별표 4 I. 일반기준 제3호”를 “별표 4 I. 일반기준 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을 해당 지역의 문화재 매장·분포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

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고서 평가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